

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윤 석 열 ㉠

2022년 6월 10일

국 무 총 리 한 덕 수

국 무 위 원 한 화 진
환 경 부 장 관
(기상청 소관)

● 법률 제18904호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

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제8조의2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8조의2(중전의 제8조)의 제목 “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)”를 “(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8조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이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(이하 “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상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”이라 한다)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검토·조정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제20조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 후 이를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여야 한다.

⑥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⑦ 그 밖에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방안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방안에 따라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.

제20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, 제3호의2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2의2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한 경우

3의2.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상관측자료를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

7.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8조제3항”을 “제8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할 수 있다.

◇개정이유

현행법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·교체·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,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·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,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측시설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기상관측망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,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기상관측환경을 점검한 후 개선방안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기상청장이 매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도록 함(제8조 신설).

나. 기상청장이 기상관측환경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관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관측기관은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을 개선하도록 함(제19조).

다. 관측기관의 장이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관측시설을 구축 및 관리하거나 기상청장의 개선방안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기상청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제23조).

<법제처 제공>